한국대학스키연맹
Korea University Ski Team Association

한국대학스키연맹 제79대 학생위원회

3차 주장단 회의

- 일시 : 2026년 5월 9일 오후 1시
- 장소 : 파인포레스트 정선알파인리조트 세미나실

1. 공지사항

1) 연간 계획
2) 회원 등록
3) 학생위원회 혜택 포인트 지급
4) 신입생 환영회

2. 보고안건

1) 회계 보고
2) 포인트 현황 보고
3) 25/26시즌 회장배 대회 관련 78대 학생위원회 사과문

3. 회의안건

1) 회칙 개정 안건
2) 현장 안건 접수

1. 공지사항

1) 연간계획

월	행사	비고
5월	주장단 LT (5월 9일~10일) 3차 주장단 회의 (5월 9일) 신입생 환영회 (5월 30일)	
6월	4차 주장단 회의 (6월 27일)	
7월	장비 설명회 (7월 4일) 의학 세미나 및 5차 주장단 회의 (8월 1일)	
8월	하계 MT 및 6차 주장단 회의	
9월	7차 주장단 회의	
10월	체육대회 8차 주장단 회의	
11월	KUSTA 일일호프 9차 주장단 회의	
12월	10차 주장단 회의	
1월	시즌 개막식	

- 해당 일정들은 변동 가능함

2) 회원 등록

회원등록 조건 (3가지 모두 완료 시 정상 회원 등록 가능)

[1. 홈페이지 신규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보완]

- 홈페이지 URL: https://www.kusta.or.kr

- 기가입자: LOGIN → MY PAGE → 회원정보수정

- 신규 가입자: JOIN → 회원가입 진행

(회원종류는 반드시 '재학생'으로 선택)

(회원정보의 모든 필드를 반드시 입력)

(신규가입교와 성균관대는 회원가입 시 서남대 선택)

[2. 회원등록 양식 작성]

- 네이버 폼 URL: URL: https://m.site.naver.com/26Hsl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동일하게 입력)

[3. 연맹 회비 납부]

- 납부기간별 회비
  - 1차 (1학기) : 2026/05/01 - 2026/08/31 기간내 납부시 적용 회비 **50,000원**
  - 2차 (2학기) : 2026/09/01 ~ 한국대학스키연맹 26/27 시즌권 신청 마감일(D) 전일(D-1일)까지 납부시 적용 회비 **55,000원**
  - 3차 (시즌중) : 2차마감 이후 ~ 이후 납부시 적용 회비 **60,000원**
- 납부 계좌: 카카오뱅크 3333-36-8260428 (황두현)

[2026 KUSTA 회원등록 안내] 문서 참고

3) 학생위원회 혜택(포인트 지급)

- 4.4 이사회 워크샵 논의 후 확정 (학생위원회 혜택 관련)
- 학생위원회 1인당 소속팀에 포인트 2점씩 지급(ex. 건국대의 경우 학생위원회 임원진이 1명 포함되기에 2점)
- 기타 혜택은 이사회와 협의 중
- PR팀 공석 안내
  - 임원 직책 2명 공석
  -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

4) 신입생 환영회

[일시]

- 행사 시간: 2026년 5월 30일 (토) 17:00 ~ 21:00 (공식행사 종료)
- 입장 시간: 16:30 ~ (18:00 이후 입장 시 포인트 미인정)

[장소]

서울주막 강남역본점 (서울 서초대로 73길 리가스퀘어 B1)

[참가비]

- **참가비**: 37,000원/ 1인

- **입금 계좌**: 카카오뱅크 3333-36-8260428 (황두현) / (학교 별 일괄 납부)

- **학교별 일괄 납부**: 입금자명은 "신(신환회) 팀명 + 인원수"로 기입. ex)(신 건국대 12) or (신환회 건국대 12)

- **입금 및 신청 기한**: 5월 22일 23:59까지

- 참가 신청 및 입금 후 참가비 환불은 불가하며, 참가 인원 교체는 동일 스키팀 내에서만 가능함

[참가 인원]

- **참가인원 명단**: 참가비 일괄 납부 후 폼과 함께 제출 (신청폼은 추후 공지)

- 팀 당 최대 참가 인원, 인정 포인트 제한 예정 (수요 조사 후 공지 예정)

※반드시 신분증 지참 필수※

※신분증 미지참 또는 성인 확인 불가 시 행사 입장 불가 하며 참가비 환 불 불가※

2. 보고안건

1) 회계 보고 (2026.05.08. 기준)

4월			
항목	수입	지출	잔액
주장단 LT 참가비	₩ 4,780,000		
주장단LT 렌트비		₩ 151,200	
주장단LT 황태덕장 예약금		₩ 100,000	
이자	₩ 123		
체크카드 캐시백	₩ 3,000		
Total	₩ 4,783,123	₩ 251,200	**₩ 4,531,923**

- 2차 주장단 회의 회계 보고 이후 별도 지출내역 없음

2) 팀별 포인트 현황 (2026.05.08 기준)

	학교명	출석여부	릴스 촬영	기타2	기타3	합계 포인트
서/경	가천대	6	0	0		6
서/경	가톨릭대 의대	6	0	0		6
충/강	강원대	0	0	0		0
서/경	건국대	6	4	0		10
충/강	건양대	6	4	0		10
전/경	계명대	6	0	0		6
서/경	경기대	4	0	0		4
서/경	경남대	0	0	0		0
서/경	경희대	6	4	0		10
서/경	경희대 의대	6	0	0		6
서/경	고려대	6	4	0		10
서/경	고려대 의대	0	0	0		0
충/강	고려대 세종	6	4	0		10
서/경	광운대	6	4	0		10
서/경	국민대	6	4	0		10
전/경	금오공대	0	0	0		0
충/강	단국대	6	4	0		10
충/강	단국대 치대	2	0	0		2

충/강	대전대 한의대	6	4	0		10
서/경	동국대	6	4	0		10
전/경	동신대	0	0	0		0
전/경	부산대	0	0	0		0
서/경	서강대	6	4	0		10
서/경	서울과기대	6	0	0		6
서/경	서울교대	4	0	0		4
서/경	서울대 남자팀	4	0	0		4
서/경	서울대 여자팀	0	0	0		0
서/경	서울여대	6	4	0		10
서/경	성균관대	6	0	0		6
서/경	성신여대	6	4	0		10
서/경	세종대	6	4	0		10
서/경	숙명여대	6	0	0		6
충/강	순천향대	0	0	0		0
서/경	숭실대	3	0	0		3
서/경	아주대	6	4	0		10
서/경	연세대	5.5	4	0		9.5
서/경	연세대 의대	0	0	0		0
충/강	연세대 미래	0	0	0		0
충/강	연세대 원주의대	4	0	0		4
서/경	용인대	1.5	0	0		1.5
전/경	울산과학기술원	0	0	0		0

전/경	원광대	0	0	0		0
서/경	이화여대	6	4	0		10
서/경	인천대	0	0	0		0
서/경	인하대	6	4	0		10
전/경	전남대	0	0	0		0
전/경	제주대	0	0	0		0
충/강	중부대	0	0	0		0
서/경	중앙대	6	4	0		10
충/강	충북대	2	0	0		2
충/강	한국과학기술원	4	0	0		4
충/강	한국교원대	0	0	0		0
서/경	한국외국어대	6	0	0		6
서/경	한국항공대	6	4	0		10
충/강	한서대	0	0	0		0
서/경	한양대	6	4	0		10
서/경	홍익대	6	4	0		10

3) 25/26시즌 회장배 대회 관련 78대 학생위원회 사과문

- 2026년 1월 29일 진행된 회장배 대회, 의대배 대회 시상 과정에서 시상 순위 반영에 착오가 발생하였음
- 운영 방식상 의대배 출전 선수가 자동으로 회장배 출전 선수에 포함됨
- 의대배 출전 선수들이 회장배 스타트리스트와 분리되어 공지되는 문제 발생
- 시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여 시상 순위에 착오가 발생

- 2026년 4월 4일 이사회 워크샵에서 해당 내용 논의
- 이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78대 학생위원회에서 사과문 발표

3. 회의 안건

1) 회칙 개정 안건

<회칙 개정안 전체 내용>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대학스키연맹 학생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칭한다.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대학스키연맹 학생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이다.	자구수정
제2조 (위치) 본회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전국 규모 경기 단체인 한국대학스키연맹의 구성원이다.	**제2조 (소속)** 본회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전국 규모 경기 단체인 한국대학스키연맹의 구성원이다.	법규 문례에 따른 용어 정비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스키 실력을 향상하고, 스키팀과 교류하며, 동계 스포츠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학 스키팀(이하 "스키팀"이라 한다)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 스키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동계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한국대학스키연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정체성 명확화
제4조 (준수) 본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	**제4조 (준수)** 본회는 한국대학스키연맹 정관을 준수한다.	상위조직의 정관을 준수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회원 가입된 대학 스키팀이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회원 가입되어 활동하는 스키팀이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자구수정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장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	삭제	조항 통합에 따른 규정의 중복 해소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의무가 있다.		중복 조항 삭제
제7조 (회의 구성) 본회는 제5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중복 조항 삭제 조항 통합에 따른 규정의 중복 해소
제8조 (회의 기구) 본회는 학생위원장 및 임원 그리고 각 학교 주장단으로 이루어진다.	**제6조 (운영 및 의사결정 기구)**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기구는 학생위원장, 부위원장, 임원, 그리고 각 스키팀 주장단으로 구성한다.	기구의 기능 및 조직 체계 구체화
	제7조 (회기) 본회의 회기는 1년이며, 매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회기 규정화
제2장 회원	**제2장 회원**	
제9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 대학 팀과 그를 이루는 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 정회원**: 정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소속된 대학 팀 중 본회에서 그 자격을 부여 받고, 회비를 납부한 구성원이 속한 대학 팀을 지칭한다 **제2항 준회원**: 준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소속된 대학 팀 중,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고, 회비를 납부한 구성원이 속한 대학 팀을 지칭한다 **제3항 승격** 준회원 대학 팀으로서 1년간 시즌 개막식,개회식을 포함한 학생위원회가 주도하는 행사의	**제8조 (회원의 종류)** ① 본회의 회원인 스키팀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소속된 스키팀 중 제10조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스키팀을 말한다. ③ 준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소속된 스키팀 중 제10조에 따라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스키팀을 말한다.	조항 분리 조문체계 등 수정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참석률이 50% 이상이고 주장단회의 참석률이 70% 이상인 경우 승격 대상이 되며 제5항을 따른다. **제4항 강등** 정회원 대학 팀 중 1년간 시즌 개막식, 개회식을 포함한 학생위원회가 주도하는 모든 행사에서 참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강등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각 행사에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참가 시, 해당 학교의 참석을 인정한다. **제5항 자격 심사**: 학생위원장은 매 시즌 마지막 주장단 회의에서 1년간 시즌 개막식, 개회식을 포함한 학생위원회가 주도하는 행사 참석률을 바탕으로 승격 및 강등 투표 대상학교를 발표한다. 그 후, 차기 학생위원장의 첫 주장단회의에서 대상 학교에 대한 승강투표를 진행,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과는 즉시 발표한다		
제10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온라인-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온라인-오프라인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 내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본회 내의 각종 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운영 정보 접근권: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사업계획, 결산 보고 등)를 열람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회원 의무 및 권리 구체적 규정화 유관 조항 통합 배치 '갖는다' : '가진다'로 통일 조문 체계 수정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대한 고지를 요구할 권리. 2. 의견 개진 및 청구권: 본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 기구에 특정 안건의 심의를 청구할 권리. 3. 공정 심사 및 방어권: 자격 변동 및 징계 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고 충분한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받으며, 변론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 ④ 회원은 본회의 공동체 유지와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규정 준수: 본 회칙 및 본회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제5장(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품위 유지 의무: 연맹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할 의무. ⑤ 각 스키팀의 구성원은 자신이 소속된 스키팀 대표자(또는 주장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신설
제11조 (선거권) 정회원은 본회 내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본회 내의 각종 선거권을	**삭제**	유관 조항 통합 배치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가진다.		
	제10조 (회원 자격 변동) ① 회원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 의무가 있으며, 학생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선정, 회기 내 마지막 주장단 회의에서 그 대상팀을 발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한다. 1. 승격 : 준회원이 당해 학생위원회 임기 내 진행된 회의 및 행사 참석률이 50% 이상일 경우, 정회원 승격 대상이 된다. 2. 강등 : 정회원이 당해 학생위원회 임기 내 진행된 회의 및 행사 참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준회원 강등 대상이 된다. 3. 운영중단팀 전환 : 운영중단팀으로의 전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상이 된다. 가. 전 회기 내 개최된 회의 및 행사 참석률이 0%일 경우. 나. 전 회기 내 학생회비 납부자가 없는 경우. 다. 인원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스키팀이 운영중단을 학생위원회에 공식 요청한 경우. ② 차기 학생위원회는 첫 주장단회의에서 전 회기 내 참여 결과에 따른 자격 심사를 의결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조항 분리 자구수정 운영중단팀 규정 조문체계 수정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 (자격심의 절차) 학생위원회는 자격 심사를 위해 투표진행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강등 투표의 경우, 투표에 앞서 강등 대상 스키팀의 대표자에게 충분한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승격 투표 및 운영중단팀 전환 투표의 경우, 별도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항 분리 자구수정 조문체계 수정
	제12조 (운영중단팀의 복귀) ① 운영중단팀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생위원회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결정 기구의 의결을 거친다.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결과는 즉시 발표한다. ② 운영중단팀이 복귀하는 경우 제27조(가입 자격)의 '자체적 단체 활동 충족' 요건은 면제하며, 지위는 '준회원'으로 한다.	신설 운영중단팀 복귀 규정화 조문체계 등 수정
제3장 학생위원회	**제3장 학생위원회 임원진**	
	제13조 (학생위원장 후보자의 자격) 학생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스키팀에 소속으로 휴학 또는 재학 중인 자. 2. 1년 이상 본회의 활동에 참여한 자. 3. 현직 학생위원장의 추천을 받거나 10개 이상의 스키팀	규정의 논리적 흐름에 따른 조문 재배치 자구수정 조문체계 등 수정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주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	
	제14조 (학생위원장 선출 방식) ① 학생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각 스키팀 당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유권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유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규정의 논리적 흐름에 따른 조문 재배치 자구수정
제12조 (학생위원장의 선임 및 지위) 차기 학생위원장은 현 학생위원장의 임기 내 마지막 주장단회의에서 선출하되,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본회를 대표한다.	**제15조 (학생위원장의 선임 및 지위)** 차기 학생위원장은 회기 내 마지막 주장단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한국대학스키연맹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를 대표한다.	자구수정
제13조 (학생위원장의 직능) 학생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직능을 갖는다. 제1항 정기총회, 주장단회의 및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본회의 모든 행사를 지휘, 감독한다. 제3항 대회 및 행사 중 사고 시, 학생위원장은 대학 팀 구성원에게 의무실 또는 응급실의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학생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학생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임원진을 구성한다. 2. 주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운영장이 된다.	자구수정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표기 조문체계 수정 불필요한 내용 삭제
	제17조(학생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학생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수립. 2. 회의 사업 결과 보고 및 결산 보고. 3. 주장단 회의 운영. 4. 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재정과 개정 작업. 5.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표기 조문체계 등 수정
제14조 (학생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 학생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 시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기)** 학생위원장 및 학생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자구수정 임원진 임기 규정화 단서 괄호 삭제
제15조 (부위원장의 지위 및 직무) 부위원장은 학생위원장 유고 시, 학생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은 운영지원팀, 회계팀, 사업기획팀, PR팀, 훈련지원팀의 순서로 각 팀의 부위원장이 대행 권한을 갖는다.)	**제19조 (부위원장의 지위 및 직무)** 부위원장은 학생위원장을 보좌하며 학생위원장 유고 시, 학생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은 학생위원장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부위원장이 대행 권한을 가진다.	자구수정
제16조 (학생위원회 구성) 학생위원장은 해당 연도 학생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되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생위원회 임원 승인)** 학생위원장은 해당 회기의 학생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4장 회의 및 행사	**제4장 주장단 회의**	
제17조 본회의 의사결정은 정기총회, 정기 주장단 회의, 임시	**제21조 (주장단 회의)** ① 본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장단	자구수정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회의를 통해 진행하며, 학생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식 회의 진행 형식은 학생위원회가 지정한다. **제1항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대학 팀의 주장단이 참여하여 진행한다. 의장은 학생위원장이 한다. 3월 중에 진행하지 못할 시 임시 회의를 진행한다. **제2항 정기주장단 회의**: 학생위원장은 임기 내 8번 이상 정기 주장단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주장단 회의는 학생위원회 및 각 대학 팀의 주장단으로 한정한다. **제3항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학생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학생위원회 및 각 대학 팀의 주장단으로 한정한다. **제4항 의결권 위임** 대학 팀의 주장은 의사결정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 참석치 못할 시에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다.	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학생위원장은 매 회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장단 정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임시 주장단 회의는 학생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각 스키팀의 주장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 참석치 못할 시에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기구 간소화 실무 유연성 확보 '총회' 용어 삭제 조문체계 등 수정
제18조 (의결정족수) **제1항 정기총회** 온라인 출석을 포함한 정회원 학교 주장, 주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하 대표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주장단 회의:** 정회원 학교 대표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주장단 회의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출석을 포함한다)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칙 개정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출석을 포함한다)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활동 포인트 제도에 관한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사안의 경중에 따른 의결 기준 위계화 의사결정 참여 범위 조정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3항 임시회의: 정회원 학교 대표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온라인 출석을 포함한다)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행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갖는다. **제1항 정기행사** 1) 주장단 LT 2) 신입생 환영회 3) 한국대학스키연맹 하계 MT 4) 체육대회 5) 스키대회 **제2항 비정기 행사** 비정기 행사는 해당 연도 학생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3조 (정기회의)** ① 학생위원회의 주장단 정기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 확정되며, 승인 여부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당 회기의 운영 목표, 행사 계획 및 예산안. 2. 전 회기의 사업 결과 및 결산 결과 보고. 3. 전 회기의 참여 결과에 따른 스키팀 자격심의. 4. 회칙의 재개정.	조항의 포괄화 및 행사 운영 유연성 제고 조문체계 등 수정
	제24조 (회의 및 행사 참석률 기준) 회의 및 행사 참석률은 당 회기 내 진행된 회의 및 행사 전체 횟수 대비, 해당 스키팀이 참가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제10조 회원 자격 변동 및 심의의 정당성 확보
제5장 학생위원장 선거	**삭제**	
제20조 학생위원장의 선거 출마 자격은 정회원 대학 팀 재학생이면서 1년 이상 대학 팀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삭제**	규정의 논리적 흐름에 따른 조문 재배치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현 학생위원장의 추천을 받거나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10개 대학 팀 주장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제21조 학생위원장의 선출은 비밀투표로 진행하며, 회원들의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각 학교 당 투표권은 주장과 차기 주장에게 총 2장이 주어진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삭제**	규정의 논리적 흐름에 따른 조문 재배치
제6장 재정	**제5장 재정**	
제22조 본회의 경비는 본회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제22조 (경비 충당)** 본회의 경비는 본회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자구수정
제23조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제1항 납부** 본회의 회원 학교 구성원은 매년 한 번씩 학생회비를 내야한다. **제2항 차등** 회비는 총 3번에 걸쳐서 받으며 (1학기, 2학기, 학생위원회 공식 합숙 시작일) 금액은 후에 낼수록 더 늘어난다. 또한 정회원인 학교와 준회원인 학교 역시 차등하여 납부한다. 납부 기한은 학생위원장 및 회계팀 부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4조 (학생회비 납부)** ① 본회의 회원 구성원은 매 회기 학생회비를 연 1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매 회기 학생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하며, 주장단 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구수정
제24조 본회의 결산보고는 1년의 임기가 끝난 후 회계팀 부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결산보고)** 본회의 결산보고는 학생위원회에서 회기 종료 후 이사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7장 징계	**제6장 징계**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25조 (징계) 학생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대학 팀에게 정기총회, 정기 주장단회의 및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제1항** 부정선수를 대회에 참여시킨 대학 팀. - 부정선수: 미등록자, 대리인, 1부 자격의 2부 경기 출전 선수 - 공식 사과 및 2년간 준회원 강등, 준회원의 경우 퇴출 - 부정선수: 영구 제명 **제2항** 1년 간 주장단 회의와 정기행사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대학 팀. - 참석률 50% 기준은 학생위원장이 첫 번째 주장단 회의에서 반드시 공지해야 하며, 참석률 기준을 미달한 학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기총회, 정기 주장단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투표를 통하여 1년 강등 및 퇴출을 결정한다.	**제26조 (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키팀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해당 징계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1. 부정선수를 대회에 출전시킨 경우 가. 부정선수란 대회 미등록자, 대리 출전 선수, 본인 자격과 상이한 부문 경기 출전 선수를 말한다. 나. 부정선수는 본회에서 영구 제명한다.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맹 및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	징계 절차의 객관성 강화 징계 사유 재편 조문체계 수정
제8장 가입	**제7장 가입**	
제26조 (가입) 한국대학스키연맹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학 스키 팀은 한국대학스키연맹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며, 학생위원회의 승인 후 주장단회의에서 준회원 가입신청 및 발표 후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가입 조건은 선수등록 최소 인원 2명 이상, 지난 1년동안 최소 2번(1학기 1회, 2학기 1회)의 한국대학스키연맹 공식 행사 이외 학교 팀 내 자체적	**제27조 (가입 자격)** 한국대학스키연맹 및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스키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속 회원이 2인 이상일 것 2. 가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매 학기 1회 이상의	조항분리 자구수정 조문체계 수정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단체 활동을 충족해야 한다.	자체적인 단체 활동 실적을 보유할 것	
	제28조 (가입 절차) ① 한국대학스키연맹 및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스키팀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장단 회의에서 준회원 가입 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가입 여부는 제1항의 발표 후 주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조항분리 자구수정
제27조 (가입비 납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준회원 가입이 승인된 경우,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학생위원장은 준회원 가입 승인을 이사회에 요청할 때 가입비 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가입비 납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준회원 가입이 승인된 경우,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학생위원장은 준회원 가입 승인을 이사회에 요청할 때 가입비 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규정
제9장 한국대학스키연맹 개최 대회 참가 자격	**제8장 한국대학스키연맹 개최 대회 참가 자격**	
제28조 (1부 자격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1부의 자격을 얻는다. **제1항**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에 알파인 스키 종목 엘리트 선수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제2항**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 주니어데몬스트레이터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제3항** 대한스키지도자연맹 Level3 이상 자격 보유자,	**제30조 (1부 자격)**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1부의 자격을 얻는다. 1.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에 알파인 스키 종목 엘리트 선수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 주니어데몬스트레이터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 3. 대한스키지도자연맹 Level3 이상 또는 스키장경영업협회	자구수정 조문체계 수정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스키장경영업협회 티칭3 이상 자격 보유자. **제4항** 한국대학스키연맹 개최 스키대회 신인부 대회를 제외한 대학부 개인전 입상 기록 보유자 (3위이내.)	Teaching3 이상 자격 보유자. 4. 한국대학스키연맹 개최 스키대회 중 신인부 대회를 제외한 대학부 개인전 입상(3위 이내) 기록 보유자.	
제29조 (신인)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신인의 자격을 얻는다. **제1항** 한국대학스키연맹에서 개최한 대학부 대회 출전기록이 없고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2항** 이전 신인부 대회의 출전기록(DNS)이 있지만 친인척의 사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다음의 신인부 대회 출전 자격을 갖는다.	**제31조 (신인)**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는 신인의 자격을 얻는다. **1.** 한국대학스키연맹에서 개최한 대학부 대회 출전기록이 없고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이전 신인부 대회의 출전기록(DNS)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위원회와 한국대학스키연맹 경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 신인부 대회 출전 자격을 가진다.	자구수정 조문체계 수정
제30조 (시상) **제1항** 개인전 시상은 한국대학스키연맹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한다. **제2항** 단체전 시상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대학스키연맹 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해 정한다.	**제31조 (시상)** ① 개인전 시상은 한국대학스키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한다. ② 단체전 시상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대학스키연맹 경기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해 정한다.	자구수정
제10장 회칙개정	**삭제**	
제31조 (회칙 개정발의) 본회의 회원은 필요시 주장단회의 전에 건의사항을 학생위원회에 건의하고 주장단회의에서	삭제	조항 통합에 따른 규정의 중복 해소

회칙 원안	회칙 개정안	개정 사유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제32조 (의결) 정기총회, 정기주장단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의결한다.	삭제	조항 통합에 따른 규정의 중복 해소
제33조 (공포) 개정 및 수정된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삭제	조항 통합에 따른 규정의 중복 해소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현장 안건 접수